제3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 2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·복 지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**토 보 고 서**

2023년 11월 22일 전문위원 권 오 숙

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3 - 151

나. 발 의 자: 김성한 의원 외 5명

다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## 2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,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모유수유실 설치 장소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
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「모자보건법」
- 2)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해당부서: 건강관리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11. 10. ~ 11. 14.) 결과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취지

○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**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** 상위법에 근거한 <u>조례의 목적</u>과 <u>조례</u> 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모유수유실"이란 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이며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. .

○ **안 제3조에서는**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<u>모유수유실</u> 설치·운영의 권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제3조(모유수유실 설치) ① 구청장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
- 2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- **안 제4조에서는** 모유수유를 권장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<u>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</u>하였고
- **안 제5조에서는** 국가, 시,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<u>협력</u> 체계 구축¹)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
- **안 제6조에서는** 실질적인 사업 시행에 필요한 <u>예산의 지원</u>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

제6조(예산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,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 •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sup>1)</sup> 인구보건복지협회: 인구변화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성 평등 관점에서 일·생활균형을 지향하며 대국민 홍보와 교육(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연계, 수유시설 설치 물품지원,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발행)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·운영과 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,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부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- 세계보건기구(WHO)와 미국소아과학회에서도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이는 '완전모유수유'를 권장하는 등 모유수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으나, 우리나라 완전모유수유 비율은 감소 하고 있고<sup>2)</sup>
- 모유수유시설은 수유 뿐만 아니라 기저귀를 교환이나 이유식 섭취 등 유·아동 외출 시 필수공간이나,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'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' 보고서에 따르면,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'직장 같은 공공장소의 수유실 설치'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
- 현재 우리구에는 33개소의 수유시설이 등록되어 있는데3)
- 2018년부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[공연장 및 관람장, 전시장 및 동식물원],

<sup>2)</sup> 출처: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(JKMS)에 발표된 「2010~2020년 국내 영유아 933명 대상 연구」, 완전모유수유 비율은 2010~2012년 42.8%에서 2019~2020년 13.1%로 급감

<sup>3)</sup> 출처: 수유정보 알리미(https://sooyusil.com) 기준(2023. 11. 10.) 전국 총 3,000개소

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

-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, 조례 제정을 통해 수유인프라를 구축하여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 모유수유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 및 설치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, 공공기관 청사가 아닌 민간 시설은 권고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
-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 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

## 참고

# **관련 조례 현황**

연번	자치단체	법 규 명	비고
1	경상북도 포항시	포항시 모 <del>유수유</del> 시설 설치·운영 및 모 <del>유수유</del>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	
2	전라남도 나주시	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	
3	전라남도 순천시	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4	전리북도 전주시	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·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	
5	경기도 안양시	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6	전라남도 여수시	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	
7	경상남도 창원시	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	
8	전라남도 해남군	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9	전라남도 광양시	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10	경기도 군포시	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11	경기도 남양주시	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12	서울특별시 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13	서울특별시 용산구	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•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	
14	대구광역시 수성구	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15	서울특별시 광진구	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	
16	서울특별시 중랑구	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	
17	인천광역시 계양구	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•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	
18	대구광역시 달성군	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
19	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·지원에 관한 조례	
20	대구광역시 북구	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	
21	부산광역시 서구	부산광역시 서구 모 <del>유수유</del> 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	

# 참고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모자보건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
제10조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 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인등"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